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13 발의연월일: 2025. 3. 13.

발 의 자:조승래・민병덕・박용갑

김남근 · 강준현 · 한준호

박상혁 • 이소영 • 이해민

황정아 · 김영진 · 박정현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증권' 중 투자계약증권 등 일부 증권(이하 "투자계약 증권등"이라 함)은 그 권리의 내용이 비정형적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통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웠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이 발전 되어 투자계약증권등도 원활하게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였고,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총 6개사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음.

이에 투자계약증권등에 해당되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의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촉진에 이바지하였던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발행 규제에 한하여 투자계약증권등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유통 규제가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나.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일부 투자중개업자, 토큰증권의 발행인을 통하여 장외에서도 다수 투자자 간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166조제1항).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6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거래를"을 "거래(이하 "장외거래"라 한다)를"로,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거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통한 거래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거래
- 3.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동일 증권에 대한 발행 특례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자 또는 지정받았던 자를 통한 장외거래
- ② 구체적인 장외거래 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가업무 단위를 인가 받은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에게 그 인가업무에 관련하여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일반투자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	제4조(증권) ①
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	
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	
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	
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	
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	
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u>다만,</u>	<u><단서</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u>삭제></u>
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	
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	
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	
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	
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	
<u>다) 및 제178조·제179조를 적</u>	
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	
<u>다.</u>	
1. 투자계약증권	<u><삭 제></u>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	<u><</u> 삭 제>
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 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② ~ ⑩ (생 략)

제166조(장외거래) 거래소시장 또 제166조(장외거래) ① ------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u><신</u> 설>

	2	\sim	10	(현행	과	같음]
--	---	--------	----	-----	---	-----

거래(이하 "장외거래"라 한다)------다음 각 호의 방 법을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 자와 매수자 <u>간에 거래하는 방</u> 법으로 하여야 한다.

- 1.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 자를 통한 거래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 개업자를 통한 거래
- 3.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4 조제2항제5호에 따라 동일 증 권에 대한 발행 특례를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자 또 는 지정받았던 자를 통한 장 외거래
- ② 구체적인 장외거래 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가
	업무 단위를 인가 받은 제1항
	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에게 그
	인가업무에 관련하여서는 제16
	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
	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u>아니한다.</u>
<u><신 설></u>	④ 일반투자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의 종류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u> 정한다.</u>